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6/ 9 통권 1522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 조세전문가· 재경실무자· 총무담당자·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짱

향락 경영은 기업과 나라를 망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투명한계와 외부감사는 언어(소통)이고, 사랑(배려)입니다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명의대여는 여러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 신종호 황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제공 후 비거주자의 국내 계좌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안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개인의 매년 총수입금액과 대응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신고납부시점 >

소득구분	수입금액과 실제필요경비, 법정필요경비의 대응방법 등	소득세법 조문
사업소득	수입금액 : 해당 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 통상적 비용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27조
손실보상금 등 (사업수입가산)	임대사업장 재건축의 손실보상금(수입)과 대응경비 (철거·이사비용) → 손실보상 선수금 받았어도 다음연도 실제 이전이나, 이사시점에 손익귀속됨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연도에 과세함)	소득세법 제39조 국세청 해석 소득 2010-158 (2010.6.7.)
선임대료	부동산임대 선세금은 총수입금액 ÷ 계약기간월수로 나누어 분할수입계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근로소득	월급, 급료, 연봉, 임금, 상여, 수당, 상여처분 : 근로계 공연도 - 근로소득공제(70, 40, 15, 5, 2% 등)	소득세법 제20조
이자·배당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금융소득, 대응비용 없음	소득세법 제16, 제17조
연금소득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계좌 인출액 : 연금의 40, 20, 10% 공제 ≤ 최고한도 900만원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47조의2
기타소득	위 열거된 소득 이외 법에 열거된 소득 :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만 법정필요경비 60% 인정(공약관련 기타 소득은 80% 공제임)	소득세법 제21, 제37조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22 호 / 주간 23호

2021. 6. 9.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문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원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개인의 매년 총 수입금액과 대응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신고납부시점	표지
긴 급 사 해 설	투명회계와 외부감사는 언어(소통)이고, 사랑(배려)입니다	2
C E O 에 세 이	향락 경영은 기업과 나라를 망친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사용수익기간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 - 경상연구개발비 가능여부 - 계정과목 문의 - 사내카페 운영관련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명의대여는 여러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 증가율 -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	9 10
직 장 인 Survival	아침형 인간이 되는 법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인-952, 2020.05.26) -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관세법 등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를 적용대상이나,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078, 2020.11.30)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국세청이 꼽은 주요 Q&A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제공 후 비거주자의 국내 계좌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부가세 영세를 적용 안됨	12
세 무 정 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15 41
노 무 정 보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44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3

투명회계와 외부감사는 언어(소통)이고, 사랑(배려)입니다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 구분	회계가 불투명하고 외부감사가 없는 경우	회계가 투명하고 외부감사가 공정한 경우
기업주체	기업상황을 실물과 영상으로 설명함	재무제표와 외부감사보고서 한 장으로 종결
외부주주	모든 주주가 개별자격으로 결산 검토	감사받은 재무제표 한 건으로 검토 종결
내부직원	자신의 근로 제공과 노동의 상대적 가치를 모름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로 노동가치 쉽게 측정
외부은행	각 은행, 대역자가 각각 신용정보 입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근거한 신용 분석판단
과세관청	매출, 매입, 원가, 근로소득 등 거래건별 파악	재무제표와 세무조정신고서로 일괄 파악
회계기준	회계기준을 기업의 주관과 임의대로 적용	일관된 회계기준과 외부감사기준 적용
정보비용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모두 각자 정보입수비용 지출	외부감사보고서 한 장으로 정보 파악, 감사비용 1건
사회적 책임	기업부실시 기업 주체는 소멸되고, 채권자 손실 귀속	부실위험 최소화, 기업주체와 감사인 일부 책임부담
정보공유	모든 기업이 임의대로 작성 : 일관된 정보 고속도로 없음	기업재무정보의 고속도로가 한 기준으로 직선형 깔림

향락 경영은 기업과 나라를 망친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검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한국인들은 외국 비즈니스맨에게 왜 아름다운 경복궁을 보여주지 않는가? 대신에 킁킁한 지하실 림싸롱에 끌고가서 억지로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림싸롱 접대와 향락경영 그리고 음모스런 요정정치. 한국에서는 일부 층의 비밀 이야기가 아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재벌, 기업가, 정치가들은 어두컴컴한 림싸롱이나 고급 요정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게 등장하는 장면이다.

심복의 총에 살해당한 전직 군인 대통령의 죽은 시체에이션조차 상징적이다. 안가라는 향락터에서 꽃봉오리같은 나이의 시중드는 여자와 간드러진 노래로 유명한 여가수를 불러놓고 심복들과 한 밤을 즐기다가 그 꼴을 당한 것이다.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부인과 함께 웃음으로 화답하며 달리는 차 속에서 흉탄에 쓰러진 미국 케네디 대통령과도 극렬하게 대비되어 비참하다. 아무튼 저 꼭대기 대통령뿐이겠는가. 권력기관의 유명한 폭탄주도 어디 대낮에 사무실에서 퍼먹겠는가. 당연히 야밤의 술집이다. 잘 나가는 대기업의 중역이라면 술도 잘 마시고 노래도 가수 뺨쳐야 하는 실정이다. 그래야 접대를 잘해서 목적달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 유수의 재벌 총수인 늙은 왕회장조차 자동차에서 노래 실력을 닦았다는 소문이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그 처절함이 차라리 애처롭다.

한국에서는 중요 비즈니스일수록 대낮에 만나 토론하고 협상하지 않는다. 어둑해질 무렵 퇴근하면서 책임자 급들이 만나 예약된 은밀한 고급 술집으로 스며든다. 그리고 번사또 기생 점고하듯 취향에 맞는 어여쁘고 어린 호스티스를 하나씩 골라서 께차고 여색을 탐닉한다. 그리고 호기를 부리면서 몇백만원씩하는 양주를 퍼마신다. 술이 지나해지면 어김없이 뺨드가 들어온다. 노래를 돌아가며 불러 제끼면서 화류계 경력을 뽐내는 자리다. 노래를 못 부르면 축맥, 바보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조명은 더욱 어두어지며 현란해 진다. 그래서 마지막 수치감도 덜어준다. 좁은 공간에서 뺨드 반주소리는 고막을 찢고 노래소리 돼지 목따

듯 하더라도 좋다. 한편에서는 딸 같은 여자 호스티스를 끌어안고 쌍쌍이 광란의 춤들을 춘다. 취기와 땀이 범벅이 될 즈음 다음 순서가 기다린다. 여자 호스티스 하나씩을 끼고 미리 예약된 호텔방을 향해 흠뻑 흠뻑 들어간다. 물론 현찰 뇌물은 별도다.

이게 한국 최고의 접대며 비즈니스의 꽃이라고 관행이 되어왔다. 술과 여자와 노래와 돈의 비빔밥, 접대 향락문화. 접대가 꼭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적당히 구실을 붙여 회사돈으로 향락을 스스로 즐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마약처럼 향락과 퇴폐도 중독되게 마련이다. 이게 모두 낭비이고 부패고 타락이다. 물론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성직자처럼 고결함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도 문제다.

이런 못된 병이 한국에서만 아니었다. 한때 중국에서 같은 동포인 조선족 여자들을 싼 값에 농락했다. 그리고 모멸감을 느낀 한족의 마음 속 깊은 분노를 사기도 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제 버릇 개주지 못 했다. 한국에서 보다 더 난잡했다. 그나마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 때문이리라.

이러면서 한국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인간들이 불공정한 게임으로 기업과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게다가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는데 십분 기여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한 장년이라면 걸은 멀쩡한 듯 보이지만 속이 깨끗한 사람이 적을 거라는 한 의사친구의 귀뜸이다.

건전한 경영, 깨끗한 경영, 투명 경영으로 사람과 기업과 나라의 건강을 도모해야 한다.

전문경영이란 냉철함을 지녔으면서도 부드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토론과 협상을 통한 건강한 경영을 뜻한다. 접대 역시 광란의 뜨거운 지랄병 같은 무리한 타락과 부패가 목적이 아니다. 오해 없는 의사소통을 위한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촉진시킬 정도면 족한 것이다. 향락, 퇴폐, 구걸은 타락행위이지 결코 전문경영이 아니다.

사용수익기간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

Q 사용수익기간 변경에 따른 국세청 예규와 관련한 사항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2020년 12월 22일자로 정부와 실시협약을 변경하면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서이46012-10734(2001.12.13)에 따르면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예규상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라면 사업연도 개시시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변경 계약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사가 질의하신 유권해석에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20년 12월 22일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변경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2020년 12월 22일이라면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계약 자체는 2020년 12월 22일에 체결하였으나 효력발생이 2021년 1월 1일부터라면 2021년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상연구개발비 가능여부

Q 하기건 잡손실처할려고 하는데, 경상연구개발비 계정과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외주하청업체에 생산의뢰한 신규아이템이 양산초기과정에서 제품외관불량등이 나옴
 2. 외주업체에 당사가 개발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외주업체 업무 지도를 못 해주었고, 금형피팅 등을 수정을 잘못된 사유로 당사에서 외주업체에 발생한 손실비용(폐기, 가공비등)을 짚아한다는 개념
 이 경우 잡손실처리가 아닌 제)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가능한지요?

A 귀사의 귀책에 의해 발생된 외주업체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성격의 비용이라면 경상연구개발비보다는 잡손실(영업외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정과목 문의

Q 코로나 때문에 입사 합격을 하였으나 입사가 지연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위로금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고자 하려고 합니다.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A 입사하지 않은 입사지연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영업외손실(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며, 해당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내카페 운영관련

Q 현재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내카페를 운영중에 있는데, 기존 결제시에는 직원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판매대금으로 카페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카페관리 담당 직원(행정부서) 개인통장을 개설해서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물품구입시에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개인 소득공제에서 제외함)

앞으로는 결제방식을 사원증을 통해서 결제하고 급여지급 시 공제하여 공제된 금액을 관리 담당 직원 통장으로 이체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혹시나 세무상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직원들의 사내카페 이용금액을 회사가 각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공제된 금액을 회사통장에서 카페 관리 직원의 계좌로 이체해줄 경우 회계상 또는 세무상 이슈

A 모든 거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관리직원 개인계좌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세무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않지만, 사내카페의 운영주체가 관리직원이 아닌 회사(법인)이므로 가급적 관리직원이 아닌 사내카페 전용 법인계좌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명의대여는 여러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본인 명의 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명의대여라고 한다.

주변을 보면 친인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또는 명의를 빌려 준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해서, 심지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의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자칫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보게 될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명의대여에 따른 여러 불이익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즉 명의를 대여 받은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 조세법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 지게 된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하게 되지만,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소유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되므로,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게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명의대여는 법률상 보호되지 않는다

명의도용(남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모르는 것)에 관련된 사항은 보호받을 권리가므로 명의의 도용 등 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으로 접수할 수 있는 사항이나, 명의대여(남에게 이름을 빌려주어 남이 사용하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사항은 고충처리 신청도 할 수가 없다.

명의대여는 일종의 통정행위로서 대법원(대법원 2004.03.12 선고 2002도5090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명의 및 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허용될 수 없는 법률행위로 판단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 증가율

구분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	6월 1일 이후 양도
2주택자 이상	기본세율+10%	기본세율+20%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20%	기본세율30%

화

분양권 양도세율 변화

구분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				6월 1일 이후 양도	
	주택 외 부동산	주택 · 입주권	분양권		주택 · 입주권	분양권
			조정	비조정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	50%	70%	70%
	2년 미만	40%		40%	60%	60%
	2년 이상	기본 세율		기본 세율	기본 세율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

요건	기준	내용
기업	계속경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규모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업종	상증법 및 조특법 상 업종 영위
피상속인	주식보유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비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3개 요건 중 1가지 충족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취임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봄



일반적 증여 vs 가업승계 주식 특례 적용대상 비교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분	가업승계 주식 특례 적용대상인 경우
7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0.5억원)	증여 공제	(5억원)
69.5억원	증여세 과세 표준	65억원
50%(누진공제 4.6억)	세율	10%(30억원 초과 분은 20%)
30.15억원	산출세액	10억원
(0.9045억원)	신고세액 공제(3%)	-
29.2455억원(=30억원)	자진납부 세액	10억원



아침형 인간이 되는 법

1. 잠 더 자기

수면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다른 나쁜 버릇도 고치기 어려워진다. 운동 시간을 따로 잡아 놓는 것처럼 적어도 7~9시간의 수면시간을 꼭 남겨놓아야 한다.

2. 침실에는 '화면' 금지

잠자리에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이용하는 것도 삼가라. 당신의 침실을 휴식과 수면을 위한 은신처로 만들라.

3. 피곤할 때 잠자기

우리는 매우 바쁘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날에도 두뇌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신호를 무시하곤 한다. 자신의 피곤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4. 수면에 적합한 루틴과 환경 만들기

자신을 안정시키고 매일 반복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 꾸준히 이행하면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져 저절로 잠 잘 시간에 맞춰 몸이 수면 준비상태가 된다.

5. 자명종의 타이머 버튼 그만 누르기

깊은 잠은 보통 70에서 90분 정도 주기로 반복되는데, 바로 이때 꿈을 꾸게 된다. 그래서 REM 주기의 가장 앞부분인 '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깨는 것이 좋다.

6. 깨자마자 움직이기

침실은 평온의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니 뭔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방을 벗어나는 게 좋다.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라.

7. 매일 같은 기상 시간 지키기

아침에 샤워할 시간. 조금 늦게 출근해도 되는 날. 등 변화요소에 맞추어 자명종을 조정하지 말자. 주말에 늦잠 자는 것이 우리 몸의 리듬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8. 아침에 운동하기

오전에 꾸준히 하는 요가나 가벼운 조깅이 우리의 잠을 휘방하는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잠간의 운동으로 신진대사가 빨라지며 에너지도 더 많아져 생산성도 증가한다.

9. 자연광 받기

일상을 보내며 15분 간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맡던지 창문 앞에 앉아서 자연광을 쬐자. 생태학적인 신체 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몸의 화학물질을 조절하여 우울증을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10. 뭔가 기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수면에 들기

할 일이 꼭 찬 일주일을 준비해 보라.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안 가본 카페를 가 본다던지.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 아침에 깨어나는 것을 즐겁게 만들자.

최신 판례 예규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인-952, 2020.05.26

■ 질 의

- ○ ○ ○ ○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모듈에 내장되는 액추에이터*의 부품(Camera Module Mold)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 철재와 유사한 강도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레진을 정밀사출기계를 이용·생산하여 스마트폰 제조 법인에 100% 납품하고 있음
 - * 카메라 액추에이터(actuator)는 렌즈구동장치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카메라의 자동초점, 손떨림보정, 가변형조리개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부품임
 - 질의법인은 사업자등록 신고 시 국세청 업종코드 292903(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_주형 및 금형 제조업)으로 신고함

질 의 내용

-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 회 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스마트폰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제공 후 비거주자의 국내 계좌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안됨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법령부가-165, 2020.08.21

■ 질 의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의 국내 외화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원천으로 하는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사전법령재산-615, 2020.06.10

■ 질 의

- 재건축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여부

■ 회 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 대상의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069, 2008. 7. 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069, 2008. 7.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동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관세법 등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078, 2020.11.30

■ 질 의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법인 및 국내법인과 물품공급(대행) 3자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인도장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국내법인 명의로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의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회 신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 법인 및 국내 법인인 「물품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지침(보세판매장 내국물품 수출인도장 운영지침)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법인의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법인이 법인으로부터 단순히 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출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관세청 지침에 따른 수출인도장에서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법인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위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국세청이 꼽은 주요 Q&A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중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까지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긴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면 해당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화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가 연계되어 있다.

잔액 산출방법은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 산출하는 식이다.

미(과소) 신고자의 경우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 종료 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

관세청, 수출기업 애로 해결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세정지원 강화에서는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밝혔다. 현재 납기연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이지만, 이제는 최장 1년으

로 연장한다. 대상기업도 '성실 중소기업'에서 '성실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한도도 한시 폐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였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을 즉시 지급한다. 만약 수출 일정이 늦어질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수출이행기가능은 2년이다. 이제는 3년으로 확대하지만, 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해서 적용된다. 관세조사도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관세행정 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된다. 환적화물처리장소(CTA) 지정 및 관세조사 유예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해소를 위해 피해 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

이에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지방소비세율 7% 인상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한다.

홍영표 특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한 뒤 관련 법안의 당론 발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분권 계획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 국세청, 2021. 5

I 개요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잦은 개정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짐에 따라 근로자·회사가 감면신청 등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음
- ◇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해석사례, 계산사례 등 설명 자료를 포함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

- (현황)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12년부터 시행되어 점차 확대됨
 - 관련 세법이 계속 개정됨에 따라 취업 연도별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감면대상 여부 판단에 대한 어려움 증가
- (주요 내용)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취업자 및 비영리법인의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사례 등을 반영
 -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감면소득 비율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산사례 등을 보완
 - 중소기업 근로자 및 업무담당 직원이 감면신청 및 감면을 적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사례 및 개정사항 추가
-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 제출 (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II 제도 연혁

▣ 개정 연혁*

개정일	감면 내용	대상자	적용시기 및 적용례
'11. 12. 31. (신설)	3년간 100%	청년(15~29세)	'12. 1. 1. ~'13. 12. 31. 취업자에 대해 적용
'14. 1. 1.	3년간 50%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14. 1. 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5. 12. 15.	3년간 70% (한도 150만원)	-	'16. 1. 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6. 12. 20.	-	경력단절여성 추가	'17. 1. 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8. 5. 29.	5년간 90%	청년(15~34세)	'18. 1. 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19. 1. 1.	-	장애인범위 확대	'19. 2. 12.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20. 1. 1.	대상업종 확대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연혁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18. 1. 1. ~'21. 12. 31.	90%	150만원
	'16. 1. 1. ~'17. 12. 31.	70% ('18년 이후 90%)	150만원
	'14. 1. 1. ~'15. 12. 31.	50% ('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원)
	'12. 1. 1. ~'13. 12. 31.	100% ('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원)
60세 이상자	'16. 1. 1. ~'21. 12. 31.	70%	150만원
장애인	'14. 1. 1. ~'15. 12. 31.	50%	한도 없음
경력단절여성	'17. 1. 1. ~'21. 12. 31.	70%	150만원

III 감면 요건

■ 감면 대상자

구분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5년	90%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과세기간별 150만원
장애인 등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써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군복무)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 ※ 병역 이행 기간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감면적용 배제

- 2011. 12. 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가 2012. 1. 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경력단절 여성 제외)
 - ※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의 감면 배제하는 취지
-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

구 분	업 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유예기간: 매출액 등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 사유 제외)
 - ※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업종	○ 모든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주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주업종	○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	○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평균 매출액 ○ 자산총액 5천억원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매출액을 계산하지만, 사업연도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에 준하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 (별표1)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 할 것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폼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IV 사후 관리

■ 감면 신청 점검

- (계속 근로자) 감면신청 근로자 명단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
-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

■ 감면세액 계산

-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frac{\text{종합소득 산출세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

* '16년 이후 취업자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함

○ 감면세액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text{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times \left[1 - \left(\frac{\text{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text{산출세액}} \right) \right]$$

V 계산사례

■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례 1	<p>'21년도 8월에 취업(전근무지 감면 제외 대상)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p> <p>① 2021년 총급여 50,000,000원(중전근무지 급여 포함)</p> <p>② 현 근무지 총급여 20,000,000원(감면 신청)</p> <p>③ 종전 근무지 총급여 30,000,000원(감면 제외 대상)</p> <p>④ 산출세액 3,802,500원</p> <p>⑤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p>
<p>⇒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368,900원</p> $3,802,500 \times \frac{20,000,000}{50,000,000} \times 90\% = 1,368,900$ <p>※ 산출세액 ×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p> <p>⇒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422,400원</p> $660,000 \times \left(1 - \frac{1,368,900}{3,802,500} \right) = 422,400$ <p>※ $\frac{\text{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text{산출세액}} \times \left(1 - \frac{\text{감면액}}{\text{산출세액}} \right)$</p>	

■ 감면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사례 2	중소기업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자의 '20년 감면세액과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① 2021년 총급여 50,000,000원 ② 산출세액 3,802,500원 ③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
<p>⇒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500,000원</p> $3,802,500 \times \frac{50,000,000}{50,000,000} \times 90\% = 3,422,250 \text{ 이나, 한도액 } 1,500,000 \text{ 원 적용}$ <p>※ 산출세액 ×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p> <p>⇒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399,644원</p> $660,000 \times \left(1 - \frac{1,500,000}{3,802,500}\right) = 399,644$ <p>※ $\frac{\text{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text{산출세액}} \times \left(1 - \frac{\text{감면액}}{\text{산출세액}}\right)$</p>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사례 비교

(원)

구 분	청년 감면	경력단절여성 감면	감면대상 아님
감면율	90%	70%	-
① 총급여	36,000,000	36,000,000	36,000,000
② 근로소득공제	10,650,000	10,650,000	10,650,000
③ 근로소득금액 (①-②)	25,350,000	25,350,000	25,350,000
④ 인적공제주1)	3,000,000	3,000,000	3,000,000
⑤ 국민연금보험료주2)	1,200,000	1,200,000	1,200,000
⑥ 건강보험료주2)	1,000,000	1,000,000	1,000,000
⑦ 과세표준 (③-④-⑤-⑥)	20,150,000	20,150,000	20,150,000
⑧ 산출세액	1,942,500	1,942,500	1,942,500
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1,500,000	1,359,750	-



⑩ 근로소득세액공제주3)	163,104	214,800	716,000
⑪ 결정세액 (⑧-⑨-⑩)	279,396	367,950	1,226,500
⑫ 기납부세액주4)	808,200 (80,820)	808,200 (242,460)	808,200
⑬ 차가감 납부할 세액	△528,804	△440,250	418,300

주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부녀자 공제 미적용)

주2)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 120만원과 100만원으로 가정

주3) 716,000(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 감면세액/산출세액)

주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인이고 월급여 3,000천원 간이세액표 67,350원×12월 = 808,200 ()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90%, 7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의 기납부세액

VI 주요 해석

1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①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임
 - ②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 관련법령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제외함.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감면 허용함 (조특령§ 27② 제5호)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함
- * 국민연금법 제127조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법이 아닌 그 사회보장협정에 따름

■ 검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감면 적용 배제를 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이 당연히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특령 § 27②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제외 국가 적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 ※ 사회보장협정 자료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 '연금정보'에서 조회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해당 비영리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열거된 비영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 2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포함)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함(조특법 § 30①)

- 중소기업기본법 § 2①1호에는 영리기업을, 2호, 3호 및 4호에서는 비영리기업 중 중기령 § 3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 ※ 중기령 § 3의 요건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기준,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 범위)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검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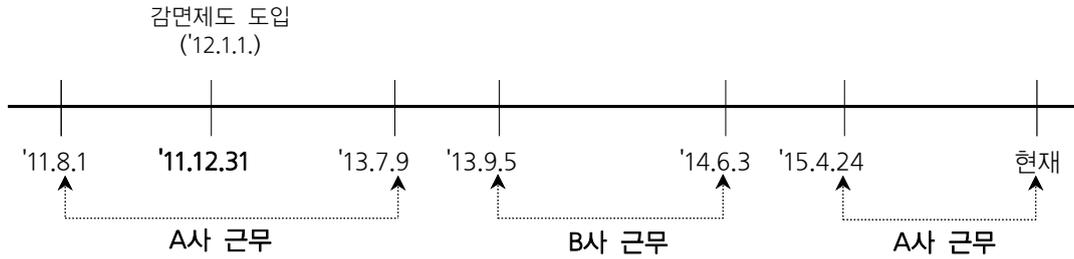
- 조특법 § 30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에서 비영리기업은 중기법 § 2①2·3·4에서 열거된 비영리기업외의 비영리기업도 포함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특법 § 30①에 따라 중기법 § 2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비영리기업 중에서 중기법 § 2①2호의 사회적 기업과 제3호의 조합법인 등만을 감면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면,
 - 굳이 ()를 만들어 ()안에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는 중기법 § 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만 규정하여도 해당 규정 2호~4호의 비영리기업은 당연히 중소기업이기 때문임
 - 따라서, 중기법 § 2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열거된 비영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기업도 조특법 § 30에 따른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
- 다만, 비영리기업도 중기법 § 3의 매출액기준, 자산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

3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 A에 취업한 자가 A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기업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입사한 경우 A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 ※ 2011. 8. 1. A사에 취업하여 2013. 7. 9.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B사에 취업하여 2013. 9. 5.부터 2014. 6. 3.까지 근무함
 - B사에서 퇴사 후 2015. 4. 24.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하여 근무



■ 관련법령

'12.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던 이력이 있는 자도 '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지만(조특법 § 30①후단)

- '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 30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조특법 § 30⑧)

■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19.05.10)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 § 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검토내용

- 조특법 § 30⑧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특법 § 30⑧의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며,
 -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세감면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조특법 § 30⑧의 규정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사실관계로 봄이 타당할 것임
- 본 건 사례와 같이 A사를 퇴사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통한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취업한 A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VII 질의 및 응답

감면 신청 일반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 1. 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 *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③ 연말정산)

4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제출 가능) (원천세과-428, 2012. 8. 17.)

5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예.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예.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9. 1. 1.부터 적용)
 ※ 재직중인 근로자는 ①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 → ②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③세무서는 감면 요건 검증 → ④회사는 감면을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감면신청서 및 ②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경정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7 2016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직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감면기간시작일 : 2016년 6월, 감면기간 : 2018년 1월~2021년 6월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증가(3년 → 5년)로 인해 2018년도에 추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 예.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10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예. 2019. 1. 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근로자 재직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적용 일반

13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따라서 2011. 12. 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5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 5. 31.)

15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42, 2013.1.16.)

16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



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원천세과-480, 2012.9.13.)

18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0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인 2014.1.1. 이후]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은 아닙니다.

예) '13년 입사 후 이직, '18년 재입사 ⇒ '13년 또는 '18년 중 선택하여 감면적용 가능

21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5.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이후 2018.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5. 4월 ~ 2020.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22

2014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9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 예. 2018.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9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2014. 5월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2017. 5월에 3년간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2018. 1월~ 2019. 5월(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23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24

2013~2017년 당시 30~34세로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2018.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취업당시에는 만 30~34세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2013. 7. 10. 입사한 33세 청년의 경우

- '13. 7. 10. ~ '16. 7. 31.: 감면 요건 미충족 ('17년 귀속 이전은 29세 이하 가능)
- '16. 8. 1. ~ '17. 12. 31.: 감면 요건 미충족 ('17년 귀속 이전은 29세 이하 가능)
- '18. 1. 1. ~ '18. 7. 31. : 취업당시 연령 34세 이하로 감면 적용
(감면율 90% 적용, 150만 원 한도)



25 2016년 입사자로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 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 90% (15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26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예,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1.1~2019.02.11취업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02.12이후 취업자: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 「5·18민주유공자에유에관한 법률」에 따른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7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재소득-163, 2013.4.1.)

28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4.1.1.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30

개인 중소기업체에 2012.1.1. 이후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감면을 받던 청년이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감면 가능한지?

- 예.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 2014-288, 2014. 8. 29.)
※ 합병, 분할, 사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감면 가능

31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부터 계산합니다.
-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32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2013.7.1 입사 후 이직, 2020.4.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20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20.4.1



33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 기간 만료로 2011. 12. 31. 퇴사 후 2012년에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입사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됩니다. 2011. 12. 31. 이전에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 1. 1.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576, 2012. 10. 25.)

34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2012. 1. 1. 이후 A사에 재취업한 경우
 -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 포함)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2019. 5. 10.)
 - ※ '13.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14.1.1. 이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감면여부 검토

35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 예.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거나,
 - 국민연금법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 12. 12.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같은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감면 대상 중소기업

3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업종 충족)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7③)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음의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유예기간: 매출액 등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 사유 제외)

38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예.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 기업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업종의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을 참고하여 영위 업종 검토

39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42, 2012. 10. 11.)

40 입사한 회사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규모 확대 등으로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5.31.)

41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 안됩니다. 합병일 이후 지급받은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24, 2014. 1. 13.)

42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기준에 계속근무자의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43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71, 2013. 9. 6.)



44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예.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 12. 12.)

4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주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 아래와 같이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을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 국세청, 2021. 5

- 김대지 국세청장은 5월 25일(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배경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수 4위(약 2억 7천만 명), GDP 16위(약 1조 1천억 불)인 거대 시장으로서 한국의 6위 기업진출국, 12위 투자대상국, 15위 교역국에 해당합니다.
 - * (기업진출) 2,352개, (투자금액) 133억 불, (교역규모) 139억 불
- 특히, 아세안 연합*(ASEAN) GDP의 37%,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주요국으로서 한국의 아세안 내 2위 기업진출국, 3위 투자대상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파트너입니다.
 -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
- 또한, '20년 12월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따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이 전망되며 향후 양국 간 경제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상품·인력 이동 및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
- 이에 따라, 세정측면에서도 이중과세 예방·해소 및 우호적인 현지 세정환경 조성 등을 위해 과세당국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

-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K-전자세정에 대한 소개 및 향후 지원, 양 과세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 상호합의 활성화 및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니다.

- ① 한국 국세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심 주제인 ‘K-전자세정*’ 을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업무 효율화 및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엔티스(NTIS), 홈택스(Hometax), 전자 세금계산서 등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세행정

- ② 양국 청장은 긴밀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개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 매년 청장회의 개최 등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기한 연장 '21. 6. → '24. 5.)

- ③ 또한, 한국 국세청은 경제교류 증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상호합의*(MAP/APA) 활성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는 제도

- ④ 사전에 서면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진출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김대지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요청하였으며, 현지 세정 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하였습니다.

붙임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6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2위 국가임

(단위: 개, 백만 불)

구분	합계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진출기업	83,129	15,884	28,039	7,595	2,352	29,259
구성비	100%	19.1%	33.7%	9.1%	2.8%	35.3%
투자금액	577,092	136,336	75,236	28,099	13,322	324,099
구성비	100%	23.6%	13.0%	4.8%	2.3%	56.3%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 '68년~' 20년 누계)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현황

○ 對 인도네시아 교역 순위: 전 세계 15위 해당

(단위: 억 불)

구 분		'20	'19	'18	'17	'16
한·인도 네시아	교역규모 (수출+수입)	139	165	200	180	149
	수출 (韓→인도네시아)	63	77	88	84	66
	수입 (韓←인도네시아)	76	88	112	96	83
전체 교역규모 (우리나라)		9,801	10,455	11,401	10,522	9,016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28일(금)	5월 31일(월)	6월 1일(화)	6월 2일(수)	6월 3일(목)
미 달 러 (USD)	1118.00	1116.00	1113.50	1107.00	1110.30
일 본 엔 (JPY)	1017.71	1015.70	1016.62	1011.19	1013.19
영 국 파 운 드 (GBP)	1587.84	1583.21	1583.01	1566.52	1573.35
캐 나 다 달 러 (CAD)	926.49	924.22	923.19	916.69	922.41
홍 콩 달 러 (HKD)	144.05	143.79	143.47	142.66	143.10
위 안 화 (CNH)	175.20	175.22	174.97	173.78	173.81
유 로 화 (EUR)	1363.12	1360.91	1361.75	1352.15	1355.73
호 주 달 러 (AUD)	865.50	860.77	862.13	857.98	860.09
싱 가 폴 달 러 (SGD)	844.06	843.57	842.89	836.92	839.5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0.08	269.99	269.97	268.27	269.16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2021. 5

■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노동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2>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 재난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재원 조달 등 계획을 수립하며,
 -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 *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협의회장·노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후 이행평가, 포상 등

- 재난이 종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 공공·민간단체 등의 포상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 평시에는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과 종사자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향후 재난 발생시 사회안정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이 한층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부당해고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법 제23조제1항)
 - ** (구제명령) △ 해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 해고이외의 경우: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

<2>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3>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의 세부항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일)

<1> 양벌규정 적용시 사업주의 면책사유 규정

- 사업주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



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시행: 공포 후 1년)

-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다.
 - ①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 * 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동법 제7조~제11조)
 - ②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보호 조치,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 *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법 제14조제4항, 제6항 등)
-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시행: 공포 후 6개월)

-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3>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시행: 공포 후 3개월)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로 개정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장의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 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끼임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3>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강화

-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관리하는 안전보건대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 * ①(계획)기본안전보건대장, ②(설계)설계안전보건대장, ③(시공)공사안전보건대장
 - 안전한 공사를 위한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4>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등 제재규정 정비

-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을 취소하는 경우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사유에 목적외 사용 등을 추가하고,
 -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종전 1배)하며, 보조·지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종전 3년)함으로써,
 - 산업재해 예방 활동 관련 보조·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였다.
-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 22. 1. 1.)

<1>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 장해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에



의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장해 등으로 직장복귀가 어렵거나 늦어졌던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례비 선지급 근거 신설

- 그간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사후에 지급하였던 장례비를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타 법률 개정안

■ 이외 「노동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 함께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상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 관련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하였다.

<2>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 현재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대량 고용변동 신고에 대해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대량고용변동 신고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 한국잡월드 사업 대상을 기존 '청소년 등'에서 '청소년 및 청년 등'으로 확대하여 청년에게도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